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26

발 의 자 : 강성국 위원외 6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8423호, 2007.5.11 공포시행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0306호, 2007.10.4 공포시행), 「청원법」(법률 제7673호2005.8.4 공포시행)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청원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함.
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74조, 「청원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라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청원법”을 “「청원법」”으로 하고, “지방자치법 제6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4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청원법 제8조 제1항”을 “「청원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(이하“의회회의규칙”이라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”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<u>청원법 제5조,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</u>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이의신청) ①청원이 <u>청원법 제8조 제1항</u>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항 (생략)</p> <p>제15조(징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<u>제9조</u>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</u>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의회위원회조례</u>와 <u>의회회의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”</p> <p>제1조(목적)----- 「<u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「<u>청원법 제5조,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74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4조(이의신청) ①청원이 「<u>청원법 제8조</u>의-----</p> <p>-----</p> <p>②항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징계) -----</p> <p>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 및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(이하“의회회의규칙”이라한다)</u>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준용규정) -----</p> <p>-----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</u>」와 <u>의회회의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

청 원 법

[전부개정 2007.1.3 법률제8171호]

제8조 (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)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.

(개정전)

第8條 (二重請願의 禁止) ①누구든지 同一內容의 請願書를 同一機關에 2個 이상 또는 2個 機關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.

②請願書를 接受한 官署가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事實을 발견한 때에는 後에 接受한 請願書는 이를 取扱하지 아니한다.